

계절학기 운영지침

1. **(목적)** 본 지침은 학칙 제2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계절학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**(개설시기)**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**(수업시간수)**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1학점에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설 과목당 1일 강의시간은 4시간 이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4. **(개설과목 및 폐강기준)**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과목 중 15명 이상의 신청과목을 개설하되, 15명 미만의 신청과목은 폐강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명 미만이라도 개설 할 수 있다.
5. **(신청학점)** 계절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은 **4학점** 이내로 한다.
6. **(수강대상자)** 수강대상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시 본 대학 재학생에 한한다. 단, 현장실습 기간과 중복될 경우 수강신청 할 수 없다.
7. **(수강교과목의 범위)** 계절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, 재수강시에는 기 취득한 성적이 C⁺ ~ F인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고 재수강 시 승급가능 성적은 A⁰까지 취득할 수 있다.
8. **(수업, 시험 및 성적인정)**
 - ① 계절학기 수업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계절학기의 시험은 1회 실시하며, 성적평가는 출석 20%, 평소 20%, 시험 60%로 한다.
 - 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A급까지 평가할 수 있다.
 - ④ 재수강 시 기 취득한 성적은 무조건 재이수 삭제되며,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반영된다.